

# 필리핀 숙취해소음료 시장조사



Product : Anti-Hangover Drink

# Content

I. 통관검역	2
II. 관세 및 세금	10
III. 인증 및 허가등록	13
IV. 라벨링 및 식품첨가물	17

# I

## 통관검역

1. 필리핀 숙취해소음료 수입통관 절차
2. 필리핀 숙취해소음료 통관검역 참고사항
3. 필리핀 숙취해소음료 수입통관 제출서류

※ 필리핀의 경우, 통관거부 사례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해당 정보는 제외하였음

# 1. TRADING INFORMATION - 필리핀 수입통관 절차

## < 필리핀 수입통관 절차 >



### INTERVIEW

“필리핀 수출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수입업자나 유통사를 찾거나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 Mr. Gerel Roa  
(식품수출입 컨설팅 회사  
Food Think Tank)

출처 : 필리핀 관세청 (www.customs.gov.ph)

□ 수입통관 서류 및 요건은 필리핀 정부부처 연계 단일통관창구를 통해 온라인 일괄 제출이 가능하며, 하기 URL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National Single Window: [www.gov.ph/faqs](http://www.gov.ph/faqs)

## < 필리핀 통관 서류 >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I)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 화물운송장(Way Bill)
-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

출처 : 필리핀 관세청 (www.customs.gov.ph)

### 서류준비

소요기간	8일
소요금액	90달러

### 통관수속

소요기간	2일
소요금액	185달러

### 항만, 터미널 처리

소요기간	3일
소요금액	300달러

### 내륙운송

소요기간	2일
소요금액	340달러

출처 : Doing Business

## 2. TRADING INFORMATION - 필리핀 숙취해소음료 통관검역 참고사항

**KEY INFO**

**Yellow Lane**

신규 수입업체가 해당되었던 Yellow Lane은 부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2010년 폐지되었음

□ 필리핀 숙취해소음료 통관검역 참고사항

- 필리핀의 수입통관은 원칙적으로 수입업체가 절차를 진행하며 업체는 수입이력 등의 기준에 따라 Super Green Lane(SGL), Green Lane(GL), Red Lane(RL)로 분류되어 각각 다른 방식의 통관을 진행하고 있음
- 업체 분류에 따라 진행되는 통관 방식은 아래와 같음

< 필리핀 업체분류별 통관진행방식 >

	업체분류 기준	통관진행 방식
<b>SGL</b>	국가공인 우수인증 보유 업체	· 화물 도착 전 통관신고
<b>GL</b>	수입이력이 준수한 업체	· 화물 도착 전 통관신고 · 사후 관세청 회계조사
<b>RL</b>	신규업체 / 수입이력 불량업체	· 화물 도착 전 통관신고 · 서류 및 실물검사 · 사후 관세청 회계조사

출처: 필리핀 관세청 (www.customs.gov.ph)

**KEY INFO**

**허가 신청 시기**

수입업체가 화물 도착 후 5일 내에 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정된 창고에 보관되며 경비가 발생함. 허가신청은 물품도착 전에도 가능함

□ 수입허가신청 시기

- 사전 수입허가 요구 물품이 필리핀 현지에 도착한 후 수입허가서를 제출하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어 30%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청구됨
- 수입허가 물품 해당여부는 관세청 수입관리대상 품목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현지 세관에서는 상이한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BOC(Bureau of Customs), AAB(Authorizes Agent Bank)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을 추천함

□ 검역

- 신선 과일 및 야채의 경우 검역 승인이 필요하나 음료와 같은 가공품의 경우에는 특별한 검역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 3. TRADING INFORMATION - 필리핀 숙취해소음료 수입통관 제출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I)

: 무역거래 시 계약이행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통관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서임. 수출업자에게는 대금 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함

SENDER (Seller/Exporter) <b>1</b> VAT <b>2</b>	<h1>Invoice</h1> Invoice Number : <b>4</b> Date: <b>5</b> Consignment Note No : <b>6</b> Purchase Order No : Invoice Currency : <b>GBP</b> Reason for Export : <b>7</b>
RECEIVER (Buyer/Importer) <b>3</b>	

Quantity	Units	Weight	Description of Goods	HS Tariff Code	Country of Origin	Unit Value	Total Value					
<b>8</b>	<b>9</b>	<b>10</b>	<b>11</b>	<b>12</b>	<b>13</b>	<b>14</b>	<b>15</b>					
Total Weight	<b>16</b>	Units of Weight	Kg	Total Number of Packages	<b>17</b>	Invoice Line Total	<b>18</b>					
Declaration(s)						Discount						
						Invoice Sub-total						
						Freight Charges						
						Insurance						
						Other Charges						
INCO Terms						Invoice Total	<b>19</b>					
Shipper Name and Job Title				Shipper Signature		Date						
				<b>20</b>		<b>21</b>						





□ 화물운송장 (Way Bill)

: 화물탁송장이라고도 불리고,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의 운송화물 영수증 역할을 하는 문서임

<b>Non Negotiable Sea Waybill</b>								
Consignor (name, address, tax reference)			Shipper's reference		Bill of Lading number			
			Forwarder's reference					
			Unique consignment reference					
Consignee (name, address, tax reference)			Carrier (name, address, tax reference)					
Notify party (name, address, tax reference)			Additional notify party (name, address, tax reference)					
Pre-carriage by		Piece of receipt						
Vessel/voyag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Final place of delivery by on-carrier						
Marks and numbers; transport unit ID		Number and kind of packages; shipping description of goods			Gross weight		Measurement	
Container no(s)		Seal no(s)	Freight details, charge etc.		Rate	Per	Prepaid	Collect
			Freight payable at		Carrier's name			
			Number of original Bill of Lading		Place (= ISO code) and date of issue (yyyy-mm-dd)			
Received for carriage as above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unless otherwise stated hereon,				Authenticating Signature				
The goods described in the above particulars								

Copyright UNECE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 상업송장과 같이 물품의 가격을 견적해주는 문서로서 신용장 개설 등 수출입 금융신청 용도로 사용함

<b>PROFORMA INVOICE</b>					
Date			Invoice No		
Bill To : [Company Name] [Address] [City/State/ZIP Code] [Country] [Phone/Fax] [Contact Person]			Ship To : [Company Name] [Address] [City/State/ZIP Code] [Country] [Phone/Fax] [Contact Person]		
Total Gross Weight	Transportation	Pay To: [Bank Name] [Bank Account Name] [Bank Account #] [SWIFT #]		Terms of Sale:	
Total # of Pieces	Currency				
Description	Qty	UOM	Unit Price	Total Amount	
Notes	Subtotal				
	Freight Cost				
	Insurance Cost				
	Total Invoice Value				

Name	Signature	Date
------	-----------	------

# II

## 관세 및 세금

### 1. 필리핀 숙취해소음료 관세 및 세금

# 1. TAX & DUTY INFORMATION - 필리핀 숙취해소음료 관세 및 세금

## KEY INFO

**PSCC 코드  
(Philippine Standard  
Commodity Classification)**

필리핀 자체 상품 분류 코드로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방식  
을 사용함

### □ 관세

- 필리핀은 HS CODE와 자체 분류 코드인 PSCC 코드로 상품 분류를 하고 있고, 필리핀 관세위원회는 홈페이지에 Tariff Finder 기능을 지원하여 정확한 관세 정보를 지원하고 있음
-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HS CODE 「2202.90.30」에 해당되는 품목은 10%의 기본 세율이 부과되지만,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할 경우 한-ASEAN FTA 특혜로 협정세율 0%가 적용됨

### < 필리핀 숙취해소음료 관세율 >

HS CODE	품목	기본세율	FTA 협정세율
2202.90.30	숙취해소음료	10%	0%

출처 : 필리핀 관세위원회 (finder.tariffcommission.gov.ph)

## INTERVIEW

"2015 ~ 2016년에는 한-ASEAN FTA의 영향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 Mr. Gerel Roa  
(식품수출입 컨설팅 회사  
Food Think Tank)

### □ 기타 세금 (소비세)

- 필리핀의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2006년 2월 1일부로 필리핀 대통령에 의해 12%로 인상되었고 2015년 8월 기준 부가가치세율은 아래와 같음

### < 필리핀 부가가치세 >

표준세율	정식 및 현지명칭
12%	· RVAT(Reformed Value Added Tax) · Karagdagang Buwis / Dungag nga Buhis

출처 : 필리핀 국세청 (Bir.gov.ph)

- 한 · 필리핀 FTA는 2008년 발효되었으며 각 국가의 세관 및 상공회의소, 자유 무역 관리원에서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일반 원산지 규정과 달리, 수입물품의 최종 제조공정은 수출국에서 이루어져야 원산지로 인정됨
- 원산지 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는 수출자의 경우 반드시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유의하기 바람

**KEY INFO**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기**

필리핀 세관에서는 추가 서류로 제출되는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는 과세 환급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통관 절차 진행 전 서류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함

**< 한 · 필리핀 FTA 관련 정보 >**

의의		한국과 아세안 시장의 무역 교두보
추진현황	협상개시	2005년 2월
	서명	2006년 8월
	발효	2008년 1월 1일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	기관발급
	발급자	필리핀(세관) 한국(세관, 상공회의소, 자유 무역 관리원)
	증명서식	국가별 증명서식
	유효기간	1년
서류	수출자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자료 보관 의무 有
보관	생산자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5년간 서류 보관 의무 有

출처 : 한국 관세청 (www.customs.go.kr)

# III

## 인증 및 허가등록

1. 필리핀 숙취해소음료 인증 정보
2. 필리핀 숙취해소음료 허가등록

# 1. CERTIFICATION INFORMATION - 필리핀 숙취해소음료 인증정보

## 주요 식품 인증정보 1

	인증명	ICC (Import Commodity Clearance Mark)	내용	-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이 인증의 대상이며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에 적용됨  - 특정 필리핀 국내 규격의 제품 품질과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선적에 대해 발행
	발행기관	제품규격국 (Bureau of Production Standards ; BPS)		
식품 인증	성격	필수		

- ICC는 매번 선적되어 수입되는 물량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마크는 당국의 장 또는 그가 임명한 대리인에 의하여 매 선적분 단위로 발부되어 수입화물통관에 상응하도록 모든 제품에 첨부되어야 함

### < 필리핀 ICC 인증 필요 서류 >

- 신청서 (공증된 사본 3부)
- 선화증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
- 패킹리스트
- 검수된 수입 신고서
- 송장
- DTI 사업자 등록 증명서 및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증명서
- 시험 인증서 (필요시)
- 특정 위임장 혹은 이사회 결의서 (위임 신청일 경우)

### KEY INFO

#### 관련규정

Republic Act 4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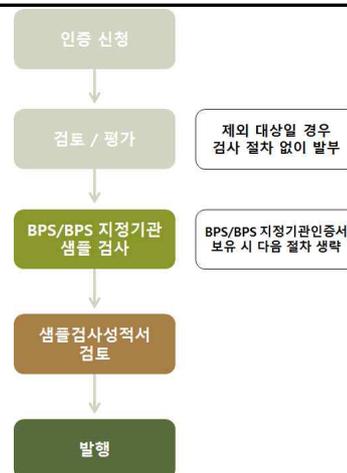
#### 행정처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E.O. No.913. Series of 1983에 따라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E.O. 913과 R.A. 7394에 따라 벌금이 부과됨

#### 시험기관

BPS에 의해 지정된 시험소

### < 필리핀 ICC 인증 취득 절차 >



출처 : BPS(<http://www.bps.dti.gov.ph/>)

주요 식품 인증정보 2

	인증명	HACCP	<b>내용</b> - 글로벌 인증기관인 SGS Group는 식품을 비롯해 여러 산업에 인증을 발급하고 있음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통과 시 발행되는 인증으로 안전하게 제조되었음을 입증함
	발행기관	SGS Group	
HACCP 인증	성격	권장	- 필리핀의 국제적인 HACCP 인증으로 공신력이 높음

INTERVIEW

"HACCP 인증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추천함. 금년도에는 HACCP 인증이 필수가 아니지만 조만간 수출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Mr. Gerel Roa  
(식품수출입 컨설팅 회사  
Food Think Tank)

□ 필리핀 현지 식품 컨설팅회사인 Food Think Tank와의 인터뷰 결과, HACCP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응답을 얻을 수 있었음. 필리핀에서 HACCP을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기관은 아직 없지만 SGS社가 가장 공신력 있는 발행 기관으로 알려져 있음

- SGS社의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HACCP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7가지 기준과 절차는 아래와 같음

< SGS 그룹 HACCP 취득 기준 >

- 식품의 생물학, 화학, 물리학적 위험요소 인지
- 각 위험요소에 따른 행동강령
-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지정
- 위해요소 중점 한계점 지정 (Ex. 최소 증해 온도)
-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위 기준의 충족과 효율적으로 운영됨을 확인
- 모든 중점관리의 문서화와 관리

< 필리핀 HACCP 인증 취득 절차 >



출처 : SGS Group Philippine(www.sgs.ph)

## 2. LICENSE INFORMATION - 필리핀 숙취해소음료 허가등록

### □ 수입 허가 등록 절차

- 수입 가공식품은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리핀 식품의약품 관리국(BFAD)에 등록해야 하며 허가 등록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음

#### INTERVIEW

"숙취해소음료 제품의 경우 반드시 BFAD 등록절차를 거쳐야만 하며 등록이 승인을 얻은 뒤에야만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

- Mr. Gerel Roa  
(식품수출입 컨설팅 회사  
Food Think Tank)

#### < 필리핀 수입 허가 등록 절차 >



출처 : 필리핀 관세청(customs.gov.ph), 필리핀 국세청(www.bir.gov.ph)

- BFAD 허가 등록을 위한 서류 작성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함. 따라서 필리핀 현지 컨설팅 회사 혹은 수입업체 등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음

#### < BFAD 허가 등록 제출 서류 >

- 지원서 No.1 작성본
- 지원서 No.8 공증본
- 제조업자와 수입업체간 유효한 계약서 사본
- 수입업자 LTO 복사본
- 미터법에 의한 단위와 용량
- 원자재에 관한 기술적 세부 내용
- 원자재 분석 공인인증서와 샘플
- 완성품의 기술적 세부 내용
- 제조부터 제품 포장까지 모든 공정의 책임자
- 필리핀 국가 공인, ASEAN 공인에 맞춘 안정성 증명서
- 실제 시장에 나갈 라벨링과 포장 샘플
- ACB 허가 사본

출처 :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협회 인증전문가 이명호 전문위원 자문내용 (2013)

# IV

## 라벨링 및 식품첨가물

1. 필리핀 숙취해소음료 라벨링 정보
2. 필리핀 식품첨가물 정보

# 1. LABELING INFORMATION - 필리핀 숙취해소음료 라벨링 정보

## □ 필리핀 라벨링 규정

- 라벨링에 포함된 내용은 BFAD의 기준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함
- 각 라벨에 포함된 영양 및 의학적 성분 내용은 식약청에서 수입 제품 평가 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입증될 수 없는 내용의 라벨을 가진 제품은 반입이 금지됨
- BFAD에 포함된 식품 라벨링 규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bfad.gov.ph](http://www.bfad.gov.ph) 에 포함된 AO No. 88-B (1994)에서 확인할 수 있음

### KEY INFO

수입업체는 수출하기 위한 제품의 라벨링 복사본을 미리 BFAD에 제공해야 함. 이것은 수입 식료품 및 음료 등록을 위해서 필요함

### < 필리핀 라벨 내 기본 표시사항 >

- 상품명
- 원재료(사용된 양이 큰 순서대로/첨가제, 향료, 방부제 포함)
- 순 내용물 및 중량
- 수입물품의 생산국 및 필리핀 수입자(유통업자)의 주소
- Lot Identification
- 제조년월일, 사용기간, 보존기간
- 사용법, 보존 방법
- 제품의 원산지

출처 : 국제식품규격표준([www.codexalimentarius.org](http://www.codexalimentarius.org))

### < 필리핀 라벨링 표시사항 상세 >

	항목	설명
1	상품명	일반 제품명이 아닌 BFAD에 승인된 제품명 기입 필요
2	원재료명 및 함량	원재료 전체와 그 함량, 기본 원재료 이외의 사항 모두 표기
3	중량	국제 규격 SI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기준 단위 표기
4	제조원 및 판매원	제조원 및 판매원 이름과 주소 기입
5	LOT 번호	영구적 기입법으로 개별포장과 전체 포장에 모두 기입
6	유통기한	유통 가능한 연월일 필수 기입

출처 : Republic of the Philippines Ministry of Health

### INTERVIEW

"라벨링은 영어로 표기하여야 하며, 스티커보다는 프린트 된 상태의 라벨링을 권장한다."

- Mr. Gerel Roa  
(식품수출입 컨설팅 회사  
Food Think Tank)

< 필리핀 기능성음료 라벨링 예시 >



출처: 필리핀 현지 촬영, 2015년 8월 13일

□ 필리핀 식품 라벨표시 법안 상정 준비

- 2014년 필리핀에서는 식품 라벨 표시 관련 법안이 상정됨
-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제품 종류, 제조업체 · 포장업체 · 유통업체 주소, 영양 성분에 대한 별도설명, 제품 1회 제공량, 1회 제공량 당 기타 수치, 총지방량과 총 열량, 영양분의 양, 비타민, 미네랄 등에 대한 표시가 라벨에 포함될 것이라고 함
- 이는 필리핀 헌법 5조 2항에 기술된 국민 건강 권리 증진에 따라 필리핀 개발 계획(2011~2016년)을 근거로 상정됨
- 소비자들의 식품 영양성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 습득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임

## 2. LABELING & FOOD ADDITIVE INFORMATION - 필리핀 숙취해소음료 식품첨가물 정보

### INTERVIEW

“필리핀 당국은 식품 첨가물 규정에 관해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 Mr. Gerel Roa  
(식품수출입 컨설팅 회사  
Food Think Tank)

#### □ 필리핀 식품첨가물 규제

- 식품첨가물 정보는 제품 라벨에 영어로 정확히 표기되어야 함
- 숙취해소음료 식품첨가물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규정에 따르며 이는 소비자들의 권익과 건강 보호를 위함임

#### < 비탄산음료 구성 성분 종류에 따른 최대허용치 제한 >

항목	허용 수치
Canthaxanthin	5 mg / kg
Lauric Arginate Ethyl Ester	50 mg / kg
Saccharins	300 mg / kg

출처 : 국제식품규격표준(www.codexalimentarius.org)

- 숙취해소음료 제품의 식품첨가물 최대허용치 제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제식품규격 웹사이트의 문서를 통해 국제번호제도 (INS)에 따른 정보와 적용연도를 조회할 수 있음<sup>1)</sup>

1) "Codex Alimentarius", <International Food Standards>, 2015년

